

한 · 미 FTA 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Korea - America FTA in Food Industry

송 성 완

Sung Woan Song

한국식품공업협회

Korea Foods Industry Association

1. 서 론

자유무역협정은 1950년대부터 서유럽과 미주지역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무역체제인 GATT 체제와 공존하면서 그 숫자가 조금씩 늘어났으며, 1995년 1월 WTO 출범 이후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시대” 라고 할 만큼 협정 체결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유무역협정이 확산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자유무역협정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이 90년대 이후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고, 두 번째는 WTO라는 다자간 무역체제가 많은 회원국 때문에 국가간 협상타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세 번째는 세계경제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개개 기업이 담당하면서 기업의 세계화로 탄생한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기업들이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거점국가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 철폐를 위한 자유무역협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이다.

한국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임도를 제고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FTA와 같은 개방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

식하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존 한국의 수출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마케팅능력을 결합하여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수출능력을 배양하는 과제가 절실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4월 칠레와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ASEAN) 등과 협상을 타결하였고, 현재는 캐나다, 미국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EU와 FTA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과 같이 대외 무역의존도가 70% 이상인 국가의 경우 세계적인 추세인 FTA를 역행할 경우 대외경쟁력을 영원히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식품산업에 있어서 FTA는 기회보다는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의 식품산업은 UR 농업협상의 결과 원료와 가공식품간의 역관세 문제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크게 악화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FTA라 할 수 있으나 한국농업의 여건과 이에 따른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역관세 문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향후 거대경제권(EU, 중국 등)과의 FTA는 한국 식품산업에 기회보다는 위기로 작용할 가

Corresponding author: Sung Woan Song, Korea Foods Industry Association, 1002-6 Pangbea-dong, Seocho-gu, Seoul 137-060, Korea
Tel: +82-2-585-5052
Fax: +82-2-3471-3616
E-mail: swsong@kfia.or.kr

능성이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거대경제권과는 처음이고, 농민단체 등 많은 NGO들로부터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한·미 FTA의 추진과정과 현재 4차 협상까지 진행된 결과, 주요 쟁점은 무엇이고, 이러한 쟁점들이 한국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식품업계의 입장을 제시코자 한다.

II. 한·미 FTA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1. 한국의 FTA 추진배경 및 현황

최근 통상환경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 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각국의 FTA체결은 DDA(도하개발어젠다)출범에도 별다른 영향 없이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2003년 칸쿤 WTO 각료회의가 실패한 이후 많은 국가들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체결된 197개의 자유무역협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5개, 70년대 12개, 80년대 10개에 불과하던 것이 90년대 64개, 2000년 이후 105개가 체결되어 전 세계 교역량의 50% 이상이 자유무역협정 내 교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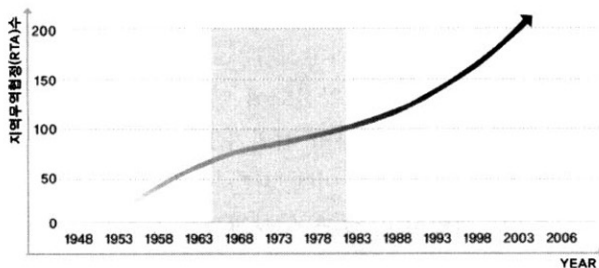


그림 1. 연도별 유효한 자유무역협정 수 변화추이.

한국은 지금까지의 다자무역체제(GATT와 WTO)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역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즉, 주요 경쟁국이 FTA를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

상환경 하에서 한국이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확대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2003년 8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고 있다.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은 순차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진행하는 것이 각 협상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여 무역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각 협상별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여 전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또한, 한국의 FTA는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로서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이를 통한 국내 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한국이 기 체결 및 후속조치중인 FTA는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FTA, 한·ASEAN FTA 등이며, 협상개시 및 진행중인 FTA는 캐나다, 멕시코, 일본, 미국 등이고, 인도와는 포괄적 경제파트너십(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타당성 검토를 포함한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및 우루과이로 구성된 MERCOSUR와는 무역협정(Trade Agreement)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 중국, 일본의 3국간 FTA나 한·중 FTA 추진 타당성에 관한 연구도 민간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다.

2. 한·미 FTA 추진배경

한·미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무엇보다도 미국시장이 전 세계 수입시장의 21.8%를 차지하는 최대의 시장으로서의 중요성과 한국은 과거 40년 동안 미국시장에 상품을 수출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최근 들어 미국시장에서의 한국의 점유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FTA 체결은 안정적인 미국 시장 확보, 미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증가 및 한국 경제제도의 선진화 촉진, 한국의 동북아 허브 전략에의 기여, 농업과 서비스 산업 등 취약 산업의 구조조

정 가속화,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FTA를 통한 개방과 자유화의 혜택들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산업정책이나 과학기술정책, 인적자원정책, 통상정책, 투자정책, 통화·재정정책 등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상이하다는 주장도 있다. 즉 정부가 한·미 FTA 추진배경으로서 위에서 살펴본 혜택들을 주장하고 있지만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매우 불확실한 전망들이며, 이는 멕시코의 경우에서처럼 대미 무역증가, 안정적 미국시장 접근, 외국인 투자증가 정도라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의 한·미 FTA 추진 이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실리적이다.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과 복잡한 규제시스템의 개선을 가장 중요한 추진배경과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에게 한·미 FTA는 NAFTA 이후 최대의 FTA로서도 의미가 크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개방된 한국시장과 미국기업의 이익을 가로막은 복잡한 관세절차와 세금체계, 복잡한 안전표준 및 의약품 테스트 요구, 영화 및 TV 프로그램 규제,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철폐이다. 이외에도 한·미 FTA가 지금까지 철저히 소외되었던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호주, 인도 등이 펼치는 FTA 네트워크에 미국에게 동북아 혹은 동아시아 경제로의 굳건한 참여기반과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¹⁾

3. 한·미 FTA 추진과정

지금까지 추진한 한국의 FTA 추진은 2003년 8월에 발표된 “FTA 추진 로드맵”에 따라 다자적 틀을 가기 위한 시작 단계로 동시다발적 FTA를 추진하되 일본, 싱가포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멕시코 등과 우선적으로 맺고, 중국, 일본, 미국, EU 등과는 중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FTA로 인한 국내외적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한·미 FTA 협상은 중장기적 추진과제였으나 2005년 6월 20일 미국 로버트 포트먼 USTR 대표가 제18차 한미재계회의에서 제시했던 한·미 FTA 협상을 위한 4대 선결조건들을 2005년 9월 20일 약값 재평가제도 중단 선언, 2005년 11월 6일 배출가스 강화 기준 수입자 적용 유예 발표, 2006년 1월 13일 미국산쇠고기 금수조치 해제,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타 현행 146일에서 73일로 축소하는 등 한국정부가 차례대로 미국의 요구를 충족함으로써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2월 3일 새벽 5시(미국시각 2일 오후 3시) 미의회 의사당에서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그동안 4차 한·미 FTA 협상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제1차 협상 결과

한·미 FTA 개막에 따른 두 가지 원칙은 양측의 이익의 균형과 민감분야에 대한 상호존중이었다. 제1차 협상에서는 전체 17개 분과 중 13개 분과에서 통합 협정문을 작성하였으며, 양측 간 입장차이가 큰 농업, 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협정문의 통합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2차 협상 결과

(2006. 7. 10(월)~7. 14(금), 한국 서울)

한·미 FTA 2차 협상은 한국의 서울에서 열렸으나, 정부조달 분과 협상은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렸다. 제2차 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분야에서는 개방불가안을, 상품, 농업, 섬유 3개 분과는 양허안(개방안)을 교환하였다. 상품과 관련하여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 원칙(framework)에 합의하여 양허단계(category)는 즉시 철폐, 3년, 5년, 10년, 기타(undefined: 양허 제외, 10년 이상 등 포함) 5개로 구분해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농산물/섬유분야는 양허안 작성에 대한 기본 원칙 합의 없이 각각 작성하여 8월 중순경 일괄 교환하기로 결정하였다.

1) 한·미 FTA 추진배경과 문제점,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회교육과

다. 3차 협상결과

(2006. 9. 6(수) ~ 9. 9(토), 미국 시애틀)

제3차 협상에서는 17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협상이 진행되어 양측은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 유보안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파악을 통해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진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은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이 보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평가하며,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저관세 품목과 같은 민감성이 덜한 품목들에 대한 우선적인 양허수준 개선을 요구하였다.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련하여서는 양국은 유보안 내용에 대한 명료화 작업과 함께 4차 협상전 교환한 관심목록(request list)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은 미국의 항공, 해운서비스,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주정부 조치의 구체적인 기재 등의 분야에 관심을 전달하였으며, 미국은 택배, 법률, 회계, 통신, 방송 등의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있음을 전달하였다.

라. 4차 협상 결과

(2006. 10. 23(월)~27(금), 한국 제주도)

제4차 협상은 상품양허안의 골격을 마련하는 등 양국은 이견차를 좁혀 나가기 시작하여 실질적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농업분야에서 양국은 양허안의 점진적 개선에 동의하고, 한국의 관심사항인 수입쿼타와 특별세이프가드의 반영에 치중하면서 미국의 섬유 양허안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다. 또한 서비스/투자 유보안의 명료화 작업을 완료하여 실질적인 협상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5차 협상전(11.18 목표)에 수정 유보안을 작성하여 교환하기로 하였다.

방대한 협상내용, 현재까지의 진도 등을 고려하여, 금년내 계획되어 있는 5차례 협상이후에 2007년 1월 제6차 협상 개최에 잠정 합의하였다.

III. 한·미 FTA가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한·미 FTA협상에서 정부의 농업부문 협상목표는 민감도가 높은 일부 품목의 양허제외 및 관세인하기간 장기화 등 다양한 유형의 관세인하방식과 신축적

인 농산물 수입쿼타, 특별긴급관세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우리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용 가능한 협상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완전한 양허제외 반대와 수입쿼타나 특별긴급관세에 대하여 엄격한 관리규범 등의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 농업부분에서의 한국의 협상목표 달성은 매우 힘든 과정이 예상된다. 더욱이 농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가공식품을 대폭 양보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 식품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2006년 11월 현재까지 4차례의 협상이 진행되면서 농업부분의 양국간 주요 쟁점 및 논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농업분과

농업부분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양허범위와 관세철폐 이행기간이다. 한국은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과 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이행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완전한 양허제외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양국의 양허안을 살펴보면, 한국은 총 1,531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즉시철폐, 2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미정(undefined) 등 총 8개 양허유형으로 양허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감한 품목은 대부분 미정으로 분류한 상태이다. 미국은 양허제외는 없다는 원칙에 따라 총 1,813품목에 대하여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내용으로 즉시철폐, 2년, 5년, 7년, 10년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전체 품목의 52.6%를 즉시철폐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4차 협상까지 미국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사료용 근채류 및 가공식품 등 한국에 대한 수출금액이 큰 품목에 대하여 관세의 단기 철폐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한국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위주로 수정 양허안을 제시한 상태이며, 민감하지 않은 품목은 양국이 상당수준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상태로 비 민감품목에 가공식품이 포함되어 있어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두 번째 쟁점은 협정문 분야에서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및 수입쿼타(TRQ)에 대한 엄격한 규범 마련이다. 통합협정문은 양국의 입장을 병기하여 작성하였으나 주요 쟁점의 처리방향은 향후 양허안과 동시에 처

리될 가능성이 크다.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은 가격기준 세이프가드는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고, 관세철폐 이후에는 세이프가드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고, 한국은 관세율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 축산물, 과일류 등 민감품목을 농산물 세이프가드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수입쿼타(TRQ)와 관련해서는 TRQ관리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및 투명성 제고에는 합의하였으나 미국의 선착순배정 원칙, 용도제한 금지, 수입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 금지 등은 한국이 반대입장을 고수하여 이견이 있는 상태로 통합협정문에 반영되어 있다.

나. 위생 및 검역(SPS)분과

위생 및 검역(SPS)에서는 한·미 FTA 타결이후 SPS사안에 대한 협의 채널을 어떻게 구성·운영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별도의 SPS위원회 신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은 양국간 접촉창구(contact point)를 통해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 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현안관련 기술협회는 양국의 전문기관 간에 FTA와는 별개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데에는 상호 동의하였다.

2. 식품산업의 입장

한·미 FTA가 한국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정부의 농산물 양허안과 통합협정문의 내용이다. 농산물 양허안 협상은 2006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제4차 협상에서는 수정양허안까지 교환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 마련에 있어 우리 식품업계는 미국 식품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민감품목으로의 분류와 일부 원료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의 입장을 제시하였으나 농업의 민감도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 비 민감품목으로 분류되면서 대부분 단기 철폐(즉시철폐~5년 이내 철폐)의 양허안이 마련되어 있다. 일부 과자류와 간장, 대두유, 전분, 당류 등에서 10년 이내 관세철폐 요구가 그나마 반영된 수준이다.

정부에서는 제4차 협상까지 가장 쟁점이 되는 품목이나 분야는 없고, 민감품목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업계나 정부의 입장

이 가공식품은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한·미 FTA 농업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소홀이 취급받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식품업계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제과산업

현재 국내 제과업체들(MAJOR 제과4社; 롯데제과, 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은 대부분 내수 중심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연간 2조원 정도이다. 미국의 과자류 제조업체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은 제품 카테고리별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BRAND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비해 마케팅/판촉력,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의 측면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과자류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외국 유명 BRAND 제품(스니커즈, M&M's, 프랑글스, 허쉬 초코렛, 도브초코렛 등)이 현재와 같이 중소 유통업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국내에 본격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직접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유명 BRAND는 과자류의 주 소비자인 청소년층과 여성 소비자들 사이에서 그 인지도와 선호도가 높고, 주로 재래 슈퍼보다는 新유통 채널(할인점, 편의점, 백화점 등)에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미국 업체가 직접 국내시장에 진입할 경우 新유통 채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는 최근의 유통 환경과 맞물려 국내 제과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과자산업의 양허안은 장기 관세철폐(10년 이상의 관세철폐)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전분당 산업

국내 전분당 산업은 수입옥수수를 원료로 하여 전분 및 전분당(몰렛, 과당, 포도당)을 제조하고 있으며, 원료 옥수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전분당은 주로 식품 및 산업용 원·부자재로서 전분당시장의 규모는 약 8,000억원 정도로,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최근 전분당 산업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 급증과 국내 수요의 감소에 따

라 전분당 시장이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분당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의 원료(옥수수) 산지이다. 특히, ADM, 카길 등 초거대기업들과의 경쟁에 있어 전분당 산업의 핵심 경쟁요소인 원료조달과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열위에 있어 국내 전분당기업은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분·당 산업의 품목별 양허안은 5년 이내 관세철폐로 옥수수가루(1102.20.0000), 옥수수의 분쇄물·조분(1103.13.000), 10년 이내 관세철폐로 인조꿀(1702901000), 캐러멜당(1702902000), 맥아당(1702903000), 기타당류(1702900000), 텍스트린(3505101000), 가용성전분(3505102000),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매니옥의 칩(0714102010), 매니옥의 펠리트(0714102020), 기타 옥수수(1005.90.9000), 가공한 옥수수(1104.23.0000), 기타·곡물의 배아(1104.30.9000), 밀의 전분(1108.11.0000), 옥수수전분(1108.12.0000), 감자전분(1108.13.0000), 매니옥전분(1108.14.0000), 고구마전분(1108.19.1000), 기타전분(1108.19.9000), 이눌린(1108.20.0000), 배소전분(3505103000), 프리젤라타나이즈드 또는 스웰링 전분(350510400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3505105000), 기타 변성전분(3505109000), 전분 글루우(3505201000), 텍스트린글루우(3505.20.2000),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우(3505209000), 포도당(1702301000), 포도당시럽(1702302000), 포도당(1702401000), 포도당시럽(1702402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1702.50.0000), 과당(1702.60.1000), 과당시럽(1702.60.2000)등이다.

다. 간장산업

간장은 양국간의 무역증진이라는 한·미 FTA의 근본적인 취지와 달리 미국에 투자 진출해 있는 일본간장의 한국시장 잠식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미국 교포시장에만 제한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한국 간장업체들에 비해 미국 전역에 판매하고 있는 KIKKOMAN, YAMASA 등 일본기업의 시장지배력의 우위는 양국간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간장시장이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산 간장은 일본의 기업과 기술로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양조간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 간장과의 품질은 비슷한 수준이다. 더욱이 간장이 한국식품의 기본 조미료라는 것을 고려하면 간장시장이 붕괴될 경우 전통식품산업의 잠식 및 일본화는 더욱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한·미 FTA 협상에서 간장은 장기 관세 철폐 품목으로 한국의 양허안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라. 설탕산업

국내제당산업은 외적으로는 국제원당시세의 변동과 내적으로는 국민소득 및 관련공업의 성장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설탕은 식품의 기초 원료이자 국민의 30대 기본 생필품 중의 하나로서 수급과 가격안정이 매우 긴요한 산업이며, 농산물 중에서도 가격 등락폭이 크고, 수급이 불안정한 품목으로서 국가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산업이다.

미국의 설탕산업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탕수수를 생산하여 원당과 설탕을 동시에 생산하는 일원화된 산업구조로, 거대자본과 연결되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Farm Bill을 근거로 일정가격 보장 및 수입규제를 통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중남미 국가를 비롯한 40개 국가에게는 정치, 경제적 지원 목적으로, 설탕을 미국내 가격과 동일한 가격과 저관세로 수입하는 반면, 여타 국가에 대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원당 및 설탕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설탕은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 중 가장 투기성이 큰 품목이며, 년중 가격변동도 200%수준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수급 및 가격안정 목적으로 자국의 설탕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원료생산부터 설탕의 생산까지 일원화된 설탕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미국과의 FTA 협상 결과 국내시장이 개방될 경우 국내 설탕산업의 급속한 잠식이 예상되는 바, 한국의 제당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설탕은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마. 대두유

국내 대두가공산업은 약 2,000억원 이상(공장부지,

부대시설비용 등 별도) 투자된 대규모 장치산업으로 대두유와 대두박을 생산하고 있다. 대두유는 필수지방산의 훌륭한 공급원으로서 국민 식생활 향상 및 체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두박은 배합사료 제조의 필수 원료로 고품질의 사료생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내 대두가공산업은 최소한의 시장확보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저가의 외국산 대두유 가격에 연동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한·미 FTA 결과 관세철폐로 대두유의 수입이 가속화 될 경우 국내 대두가공산업의 침체는 대두박 수급불안으로 이어져 배합사료업계 및 양축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대두유(조유)에 대한 양허안은 양허제외로 분류되어 보호되어야 한다.

IV. 결 론

한·미 FTA가 한국의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1차적으로 정부의 농산물 양허안과 통합협정문의 내용이다. 농산물 양허안 협상은 2006년 9월에 개최된 제3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제4차 협상에서는 수정양허안까지 교환하였다. 한국의 농산물 양허안 마련에 있어 우리 식품업계는 미국 식품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해 민감품목으로의 분류와 국내생산이 없거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원료농산물에 대한 관세 즉시철폐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한국 식품산업은 소비자단체나 언론으로부터 식품 안전에 대한 위해성 논란으로 많은 불신을 받고 있으며, 세계 거대식품기업과의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을 비롯한 거대경제권과의 FTA는 국내식품시장의 잠식을 가속화할 우려가 매우 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식품산업에 있어서 FTA는 원료조달의 용이 등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농업의 여건상 농민과 농업단체의 반

대여론에 식품산업의 의견이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오히려 가공식품의 관세율은 즉시, 또는 단기 철폐로 현재의 역관세문제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부나 농업단체, 소비자들은 식품산업을 국가경제의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인식이 부족하고 더욱이 국민건강증진과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통상정책이나 정책지원에 있어 소홀이 취급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식품산업에 많은 정책적 지원과 농업과의 연계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식품산업도 함께 발전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을 따로 분리하여 농업만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업과 식품산업이 함께 지속·발전할 수 있는 통상정책이나 정책지원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농업부문 상품양허안은 농·축·수산물만 대부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반면, 가공식품은 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미국의 요구에 따라 대폭적인 양보가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식품업계에서는 한·미 FTA가 어떻게 진행되고, 타결되는지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정부에서도 식품산업이 국민경제와 국민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미국과의 협상에서 농업과 같이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미 FTA협상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하나? 세미나 자료, 농축산신문·GSN 인스티튜트, 2006. 11. 17
2. 미국의 WTO DDA 협상포지션 대해부, 한국무역협회, 2005. 4
3. 한·일 FTA식품분야 대응방안, 한국식품공업협회, 2004.3
4. 한·미 FTA 추진배경과 문제점,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회교육과
5. 한국의 농업정책 전개과정과 발전방향, 김병택, 한울아카데미, 2002
6. WTO 체제와 농정개혁, 박진도, 한울아카데미, 2005